

Campus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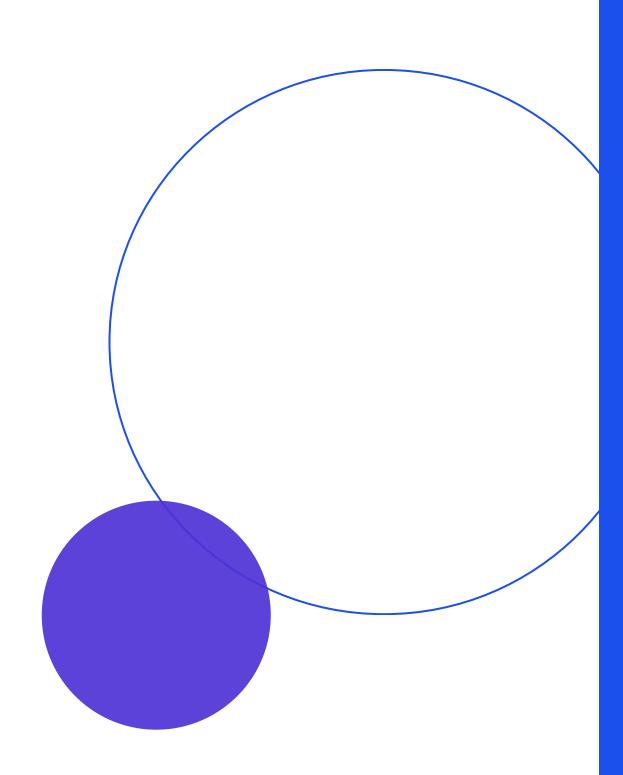
대학가 주차 공유 플랫폼 빈 공간을 나누고, 주차난을 해결해요.

> 경북대학교 16팀 저희 팀명 달구벌이죠?

FE - 이미진 이준섭 / BE - 김두현 장보형

목차

- 문제 정의
- 기획 의도
- 서비스 소개
- 형쟁사 분석
- 시장 분석
- 비즈니스 모델



"매일 아침, 강의실이 아닌 주차 공간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으신가요?"

CAMPUS PARK

대학가 주차 공유 플랫폼

PAIN POINT

구분		세부 내용	비고
교직원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직원(계약직원 및 자체고용직원 포함)	
학생	학사과정	지체부자유자	
		예술대학 대형악기 전공자	소속 대학장이 추천하는 자
		시외거주 통학생 (다만, 달성군 거주자 포함)	통학가능한 거리에서 부모를 포 함한 모든 가족과 거주하며 통학 하는 학생
		하계·동계 방학 중 학교 출입 학생	정기권 등록기간은 방학 기간에 한함

주차안내

교통관리운영 방문차량 > 정기권차량 공무용차량 현황

학교방문차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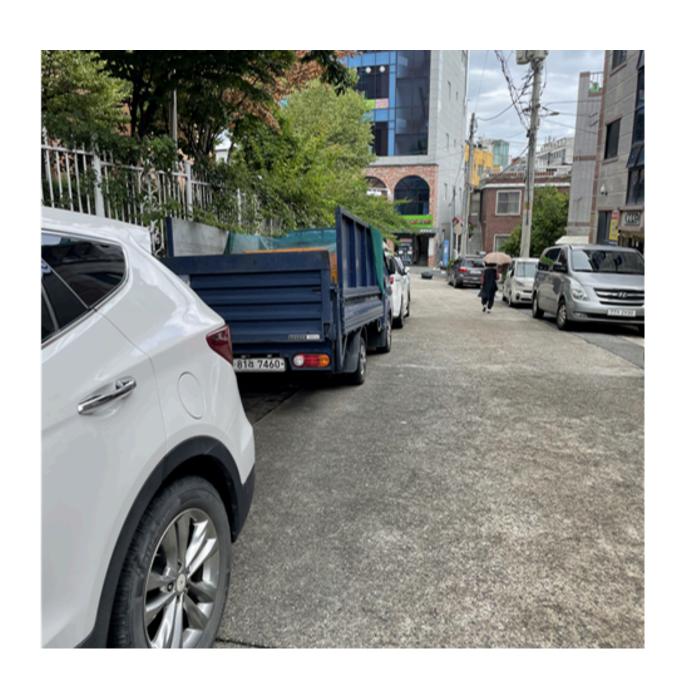
일반주차요금(카드전용)

		구분	요금(월)	비고
주차요금	입차 후 40분 이내	1,000		
	입차 후 40분 경과 시 매10분	400		
	1일 최고요금	평일	30,000	
	1 2 str. r. o	토-일요일 및 공휴일	8,000	

- 교내 주차요금 정산소: 정문, 북문, 계2북문
- · 정문, 북문: 07:00~23:00(유·무인 병행 운영) / 23:00~익일 07:00(무인 운영)
- · 제2북문: 24시간(무인 운영)
- 교내 주차요금 사전무인정산기 안내: 정산 후 30분 이내 출차
- · 위치: 학생주차장(외부), 복지관(외부), 제2체육관(외부), 글로벌플라자 1층 로비(내부), 대강당(내부)

기획 의도

숨어있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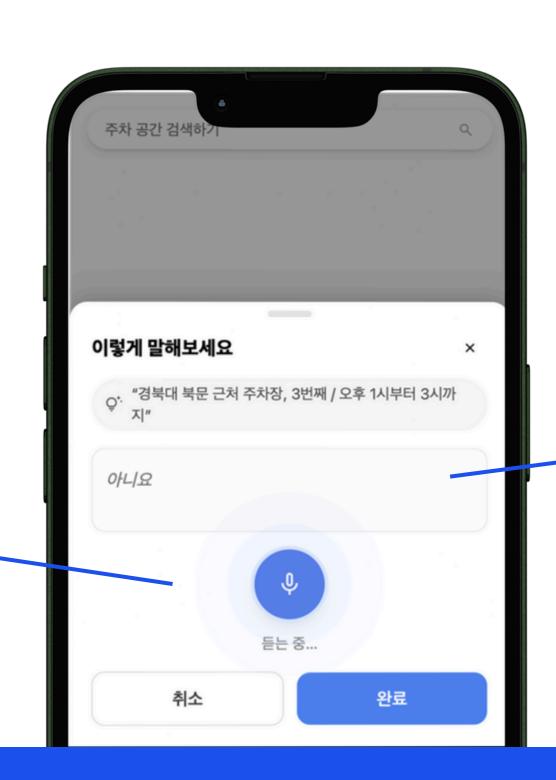




대학가 특화 주차공간 공유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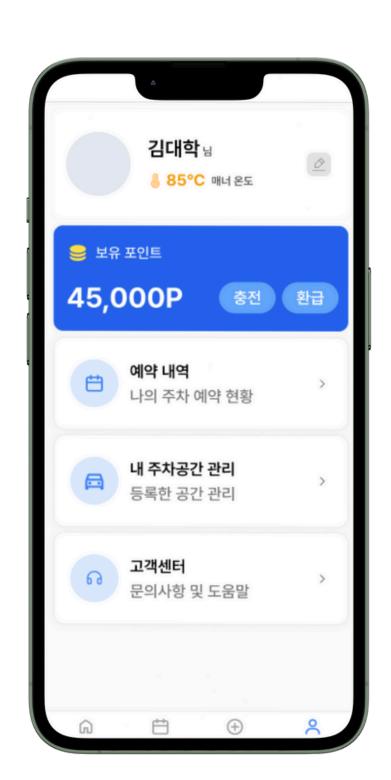
GOOGLE STT AI: 안전하고 스마트한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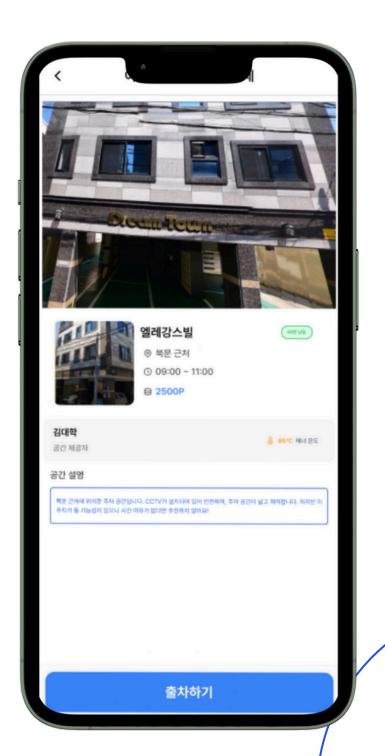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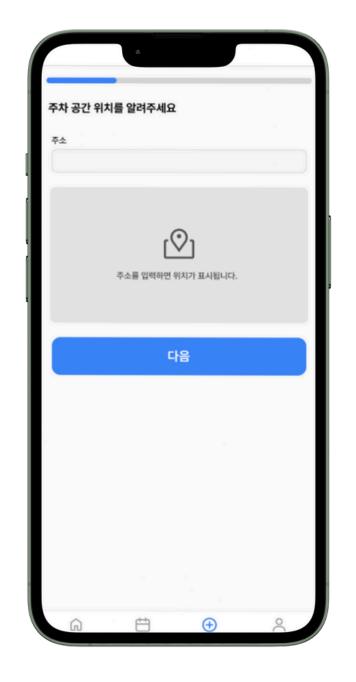
음성인식 기반 위치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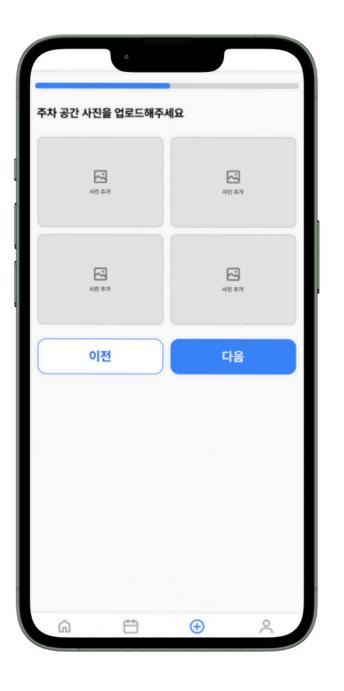
매너 온도 기반의 신뢰도 시스템





간편한 주차공간 공유와 AI 기반 단가 추천









경쟁사 분석



민간/공영 주차장 대상 일반 사용자 타겟

CampusPark

대학가 원룸/일반 상가 주차장

대학가 특화

운전 중에도 사용 가능한 AI 음성 인식 기능

시장 분석

TAM

1.5조

국내 주차시장 규모 15조원 주차장 운영 시장 규모 1.5조원 SAM

3500억

국내 대학 재학생 140만명 자가용 이용률 37% 연간 주차비 평균 120만원 SOM

7.2억

경북대 재학생: 29,000명 경북대 교직원: 3,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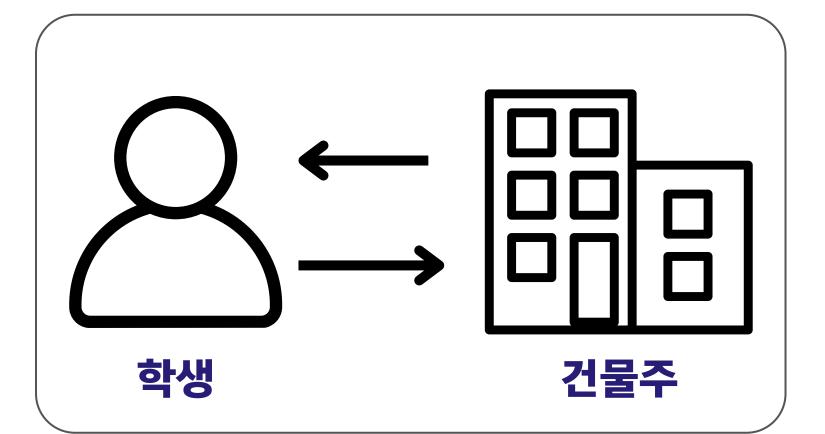
재학생 자가용 이용률: 15% 교직원 자가용 이용률: 40%

잠재 수요자 연간 주차비: 72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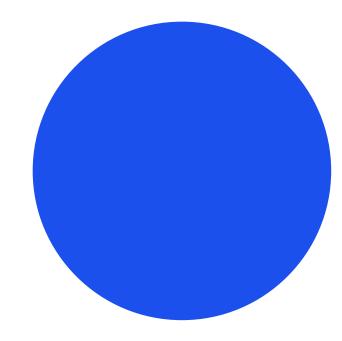
자료:
VIG 파트너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2022~2023 고등교육 통계자료집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대학생 통학 실태 보고서(2022)

실제 예약이 발생할 때 거래 수수료 징수

CAMPUS PARK 캠퍼스 팍 거래 수수료 (10~15%)



마무리



더 나은 캠퍼스 라이프를 만들다

FE: https://github.com/CampusPark/CampusPark-FE

BE: https://github.com/CampusPark/CampusPark-BE



Q&A

-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18.〉
 -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u>제19조제4항</u>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 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이 인정하는 경우
 - 3. 그 밖에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히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위 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u>「행정대집행법」</u>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u>같은 조 제2항</u> 본문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